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7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유통)방조(인정된 죄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 ○○○○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및 영화비디오법위반 방조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및 영화비디오법이 정한 각 양벌규정의 적용,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한 '비디오물'과 '유통'의 개념 및 적용,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 및 추징액의 산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